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전용차로(버스, 자전거)위반 과태료 징수결의('18년 11월)

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1조 제3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·징수 하고자 합니다.

가. 결의내역

- 위반일시 : '17.9.26 ~ '18.9.30(18. 9월)
법원 재부과, 렌터카 변경부과분, 사전통지 공시송달분 : '17.9.26.~'18.7.31.
- 부 과 건 : 4,084건(승용차 4,020건, 승합차 63건, 이륜차 1건)
※ 사회적약자 감면: 6건
※ 법원재판 재부과: 3건
- 부과금액 : 204,670,000원
(승용차 200,850,000원, 승합차 3,780,000원, 이륜차 40,000원)
- 납부기간 : '18. 11. 08 ~ '18. 12. 31

나. 예산과목 : 교통사업특별회계, 세외수입, 임시적세외수입, 기타수입, 과태료

붙임: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시분 ('18. 11월)내역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장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1/09 김정선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25157 () 접수 ()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소문동) /
전화 2133-4569 /전송 2133-4904 / / 부분공개(6)